

의안번호	2208727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 5. 15.
추계번호	25C1426

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전통무예 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11조(전통무예 교육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·발전하기 위하여 교육,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2조(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·국제대회의 개최,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,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전통무예 실태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(전통무예 교육 지원)	
3	안 제12조(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)	

2. 상세사유

가. 전통무예 실태조사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그에 따른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유사사례 또한 확인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전통무예 교육 지원(안 제11조) 및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(안 제12조)

- 개정안에 따라 전통무예 교육 지원과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개정안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전통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대회 개최(2009~2010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지원대상	지원금
2009년	전국 규모 전통 종목 생활체육 대회	시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민간단체	493
2010년		(전통무예 관련단체)	453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[표 2] 전통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강습회 지원 전국 단위 대회 개최(2018~2019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지원대상	지원금
2018년	연령·수준·대상별 전통무예 지도 강습회 (가족 단위 교육, 1박 2일 강습 등)	시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민간단체 (전통무예 관련단체)	350
2019년			20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